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성장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정책의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영양·식생활 교육사업(안 제5조)
-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(안 제6조)

-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(안 제7조)
- 재정지원, 교육 재료비 및 교육 재료비 감면(안 제8조 ~안 제10조)
- 민·관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민의 생애주기별 올바른 성장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섭취하는 음식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 정책의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됨
- 주요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5조에서는 영양·식생활 교육의 실시 및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보급에 대하여
 - 안 제6조에서는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7조에서는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 확산에 대하여
 - 안 제8조에서는 영양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안 제9조에서는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
 -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재료비 감면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11조에서는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.
-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초자치단체장이 그에 따른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본 조례는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